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목 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8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

3. 제안이유

-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나.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국한시킴으로써 1인 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주요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

4.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내용 반영 및 대상의 구체화 (안 제1조)
 - 1) (현 행)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개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2) (현 행)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정안) 구민의

나.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호 삭제 (안 제2조)

(현 행)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개정안) 삭 제

다.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 반영하여 지원 사업 추가 (안 제8조)

(현 행) 11개 사업

(개정안) 12개 사업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추가)

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 삭제 (제11조)

(현 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삭 제

마. 상위법 인용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6)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의결(2022. 8. 25.)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9.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80호로 제출되어, 2022. 9. 13.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취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과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국한시킴으로써 1인 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주요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제3조제1항 중 “고독사”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험으로부터”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로
제4조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로 하였으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으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0호 삭제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같은 항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중 “안전망 구축”을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제10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음

-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종합의견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취지에 맞게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개정 및 위화감을 주는 규정은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8. 기타자료(비용추계서, 관계법령)

가.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김상규
연 락 처	02-3153-8846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 위기사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조항을 변경함

4. 주요내용

- 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위임근거 조항 ‘제2조의제6호’에서 ‘제2조의제8호’로 변경
-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근거 법조항 구체화(제2조, 제5조, 제4조)
 - 제2조, 제5조: 상위법령 반복내용 삭제
 -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제12조제4항’ 명시
- 다. 용어 및 표현 정리(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8.25.)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9. 5.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78호로 제출되어, 2022. 9. 13.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연유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 삭제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 내용 변경과 상위법령 반복내용 삭제에 따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구체화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종합의견

- 따라서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 위기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의 내용을 수정, 삭제, 구체화 등에 대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자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7. 기타자료(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홍예은
연 락 처	02-3153-883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